

## 실기계열(법학전문대학원 실무)

### [법학전문대학원 심사기준]

계 열 구 분

사회계열

채 용 분 야 명

행정법(실무)

#### 1. 채용공고 시 지원자격

##### 가. 기본자격

-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자
-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-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국제저명학술지(SCIE, SSCI, A&HCI), SCOPUS 등재학술지 중에서 단독(1인) 주저자로 논문 2편 이상 게재한 자

##### 나. 세부자격기준

없음

2. 심사절차: 서류심사 →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→ 교육능력심사

3. 서류심사기준: [붙임 1]

4. 전공적합성심사기준: [붙임 2]

5. 연구실적심사기준: [붙임 3]

6. 교육능력심사기준: [붙임 4]

확인자 :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(인)



[붙임 1]

## 실기계열(법학전문대학원 실무) 서류심사 기준표

채용분야명: 행정법(실무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요소         | 배점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해당분야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이상        | 3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년이상 - 10년미만 | 28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이상 - 8년미만  | 25 |      |
| 실무경력의 질적수준<br>(실무경력, 논문실적, 지원분야<br>와 관련된 이력, 발전가능성 및<br>잠재력 등) | A            | 30 | 심사의견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| 26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| 22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            | 18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            | 14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   | 1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  | 6  |      |
| 총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60 |      |

1. 서류심사 총점은 아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한다.

① 해당분야 근무기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함.

② 실무경력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.

2. 심사대상 : 실무경력, 논문실적, 지원분야와 관련된 이력,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3. 해당분야 근무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조경력으로 하며, 휴직기간은 제외한다. 단, 공직 취임을 위한 휴직이나 교수로 재직한 기간 등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무기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.

[붙임 2]

## 전공적합성 심사 기준표

채용분야명: 행정법(실무)

심사기준 : 전공적합성 심사 시 학력사항, 경력사항, 연구실적물을 통한 주 연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반드시 심사 의견을 기술할 것

### 1. 심사결과

| 전공영역 적합성 | 적합성 여부 |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|
|          | 적 합    | 부적합 |
|          |        |     |

### 2. 심사의견

반드시 종합 심사의견을 기술할 것

[붙임 3]

**실기계열(법학전문대학원 실무) 연구실적심사 기준표**  
채용분야명: 행정법(실무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요소           | 배점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해당분야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이상         | 3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년 이상 ~ 10년 미만 | 28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상 ~ 8년 미만  | 25 |      |
| 실무경력의 질적수준<br>(실무경력, 논문실적, 지원분야와<br>관련된 이력, 발전가능성 및<br>잠재력 등) | A              | 30 | 심사의견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| 26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| 22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              | 18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              | 14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     | 1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    | 6  |      |
| 총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60 |      |

- 연구실적심사 총점은 아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한다.
  - 해당분야 근무기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함.
  - 실무경력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.
- 심사대상 : 실무경력, 논문실적, 지원분야와 관련된 이력,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해당분야 근무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조경력으로 하며, 휴직기간은 제외한다. 단, 공직 취임을 위한 휴직이나 교수로 재직한 기간 등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무기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.

[붙임 4]

## 교육능력심사 기준표

채용분야명: 행정법(실무)

| 평 가 항 목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 의 견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강의능력           | 1. 강의준비      | 가. 강의계획<br>나. 강의준비 충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| 심사의견 |
|                | 2. 강의내용      | 가. 강의내용의 체계성 및 적절성<br>나. 강의내용의 우수성<br>다. 관련 지식 수준 등 |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3. 강의방법 및 태도 | 가.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<br>나. 강의의 숙련도<br>다. 질의응답 태도       |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4. 외국어 강의능력  | 가. 외국어 표현 능력<br>나.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
| 인성<br>및<br>잠재력 | 1. 인성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 심사의견 |
|                | 2. 잠재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
| 총 점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|      |

1. 점수산정법

-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.

2. 1점 단위로 점수 부여함.

3. 실기계열(예체능·건축설계 실기계열)은 강의능력에 실무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함.